

1.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46,615,497	22,398,465
일반회계		686,312,951	20,589,389
특별회계		60,302,546	1,809,076
기타특별회계		60,302,546	1,809,076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10,315,805	309,474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368,165	101,045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79,500	8,3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6,805	25,40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265,170	157,955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96,349	26,8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1,405	19,84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03,787	168,114
	수질개선특별회계	29,045,560	871,367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46,532,200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40,713,243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